

1. 개정이유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함

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 및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 기한(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정하고, 신고·변경신고 수리 시 수리여부 통지기한을 정함

다. 각종 서식(안 제21조의4, 별지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

- 대통령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각종 서식(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설치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폐업신고서)을 별지로 정함

라.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절차 등(안 제22조)

-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관리대장 세부 제출절차를 정함

마.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안 제23조제2항, 별표10의2)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별표10의2로 규정함

바. 준수사항 위반 등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2)

-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시설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시설폐쇄)의 세부기준을 별표 10의3으로 정함

사.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에 따른 위임조문 정비(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24.4.25)에 따라 위임조문 정비

아. 수수료 관련 조항 적용배제 등(안 제83조의2)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수수료는 시설별 운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호가목”을 “제1호가목과 나목”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등) 법 제3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2.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장소의 변경
3. 오염물질저장시설 규모의 변경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의 변경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한)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오염물질저

장시설 폐업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역관리청이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10의2와 같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10의3과 같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및”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로, “별지 제59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을 “그”로 한다.

제68조 중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11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를 “자재·약제”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해양환경측정기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재·약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제62호서식”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을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당 자재·약제가”로, “별지 제63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 제64호서식”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를 “자재·약제”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을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따른”을 “따른 자재·약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법 제110조제4항”으로,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별표2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 제71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별지 제72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10조제4항”으로,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을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8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검인·변경검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검정”을 “검인·변경검인”으로 한다.

제8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해역관리청이 아닌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최초)10일 (변경)5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장소	
	오염물질저장시설 용도(선박폐수/폐유/폐기물 수거·처리 등 구체적으로 적시)	
	변경 내용(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최초신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1부.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1부.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부. 4.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시설규모, 처리공법, 공정 흐름도, 유입폐수의 성상, 처리규모, 최종처리 방법,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 1부.
	변경신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 호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신고 사항			
④ 사업소 소재지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⑥ 오염물질저장시설 용도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앞쪽)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 번호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용도		
③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④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⑤ 신청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철거 ¹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000원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6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 명서 번호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용도		
③ 사업소 소재지		
④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⑤ 폐업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구비서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₁₂ 원본		수수료
		없음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
- 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비 가림시설을 갖출 것
- 라.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 마. 저장시설의 배관 장치는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 바.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 관 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기준

가. 인력

-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증의 취득범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해양환경, 환경공학, 전기분야, 안전관리, 환경직무 분야)으로 제한된다.
- 2)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1) 저장시설

구분 \ 물질종류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폐기물
용량, 규모	- 1일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 3 이상의 규모	-

재질	- 반입물질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100분의90 이내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 - 저장하는 물질에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 - 물질별 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물질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상에 배출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 유입되는 물질과 보관되어 있는 물질의 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작업 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항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24시간 사용가능한 조명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외부에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

- 1) 해당 항만에서 유입되는 폐수특성을 반영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하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가) 증발농축시설
 - 나) 건조시설
 - 다) 소각시설
 - 라) 신고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2) 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위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처리능력 합을 말하며, 증발농축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건조시설과 같이 주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
- 3)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증발농축시설
-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건조시설
-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소각시설
- (1) 처리능력은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 이어야 한다.
 - (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물리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대상폐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1항과 같이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폐수로 한정한다.

(3) 폐수처리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물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이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대상폐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1항과 같이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폐수로 한정한다.

(3)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류 등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제2호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8)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 (1) 수소이온농도(pH)
-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3) 총유기탄소량(TOC)
- (4) 부유물질(SS)
- (5) 페놀
- (6) 시안
- (7) 총크롬 및 6가크롬
- (8) 아연
- (9) 구리
- (10) 카드뮴
- (11) 비소
- (12) 납
- (13) 용해성 망간
- (14) 플루오르
- (15) 수은

3. 운영기준

가. 인력배치

- 1)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인력을 적정 배치하되 저장능력 200m³ 초과인 시설에서는 최소 4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시설 관리인력은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유지,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 3) 시설 관리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시설 관리인력은 「소방기본법」 제17조 따른 소방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성분이 5% 미만인 유성혼합물은 중력식 가압식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하여야 한다.
- 2) 유수분리 후 분리된 유분(고형물, 슬러지 포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

- 1)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적항,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가동률을 적절히 유지한다.
-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 3) 폐기물저장시설에 저장된 폐기물의 저장기간은 일반폐기물의 경우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 지정폐기물 중 유기성 오니는 45일, 그 외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해서 보관하면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나 배출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 1년 이내로 보관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비치서류

- 1)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운영계획서
- 2)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 3) 오염물질저장시설 배치인력 기술능력 자격증 사본
- 4)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
- 5)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운영관련 각종 대장 등

마. 공통사항

- 1) 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 비와 눈 및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개선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의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폐쇄명령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폐쇄 명령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	폐쇄 명령				
4 시설의 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	폐쇄 명령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5호					
1)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				
2)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경고	경고	시설폐쇄		
6. 제 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6호					
1)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가. 인력 기준에 미달	-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설비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다. 기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2)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영업정지 3개월	폐쇄 명령			
4)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폐쇄 명령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폐쇄 명령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8호	영업정지	폐쇄 명령			

□ 자재·약제		검정신청서	처리기간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유처리 제, 유흡착재, 유 겔화제	5일
			생물정화제제	60일
① 품명			②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③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형식 및 규격·용량			⑦ 수량	
⑧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⑨ 제작·제조 및 수입 연월일				
⑩ 검정을 받고자하는 장소 및 일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제83조 제1항에 따름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 호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
(Type · Size · Capacity)
3. 수량:
(Quantity)
4. 형식승인번호:
(Approval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청장 인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 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 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u>제1호가목</u> 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 상인 시설로 한다. ② ~ ⑥ (생 략) <u><신 설></u>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① ----- ----- ----- ----- <u>제1호가목</u> <u>과 나목</u> ----- -----.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u> <u>신고 등) 법 제38조제2항에서 “해</u> <u>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u> <u>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오염물질저장시설의 소유자(사</u> <u>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u> <u>다)의 변경</u> 2. <u>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장소의</u> <u>변경</u> 3. <u>오염물질저장시설 규모의 변경</u> 4. <u>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의</u> <u>변경</u> <u>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u> <u>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u> <u>한)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u> <u>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u>
<u><신 설></u>	

<신 설>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① ~ ③ (생략)

<신 설>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생략)

초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관리청이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신 설>

<신 설>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61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법 제1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제62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분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10의2와 같다.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10의3과 같다.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성적서
2.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3.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4.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환경측정기기는 해양환경 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형식승인의 방법과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제63조(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① 제6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 측정원리 또는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

<삭 제>

서

3. 형식승인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

<삭 제>

사 등) ① 제61조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이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그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형식 승인을 받은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성,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별표 22의 정도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그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65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제61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기체형태, 액체형태 또는 고체형태의 표준물질로 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교정용품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기준, 검정의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의 교정용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은 이 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별표 23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그 교정용품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약제 형식승인증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

----- 별지 제60호서식-----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붙여야 한다.

제69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해양환경측정기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재·약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62

-----.

② 해양경찰청장-----

----- 그 -----

-----.

-----.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

-----.

제69조(성능시험) ① -----

----- 자재·약제-----

----- 별지 제62호서식-----

호서식의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

---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

해당 자재·약제가 -----

----- 별
지 제64호서식-----

제70조(검정) ① -----

--- 자재·약제-----

----- 해양
경찰청장-----

-----.

② ----- 기준은해
양경찰청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

· 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 해당

-----.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 따른 자재·약제 -----
-----.

② 해양경찰청장-----

-----.
-----.

③ 해양경찰청장-----

-----.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4항-----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성능시험 · 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 별표 28

2.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 검정

첨부하여

1. 2.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

1. 2. (현행과 같음)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별표29

<삭 제>

<삭 제>

업무 대행자의 경우 : 별표 29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약제의 성능
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
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4.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
지 제72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
기 업무대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② -----
----- 별지
제71호서식-----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

2. ~ 4.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청장-----

----- 별
지 제73호서식-----

제73호서식의 자재·약제의 성능 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2. (생략)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

④ 해양경찰청장-----

-----.
-----.

1. ~ 5. (현행과 같음)

6. ----- 해양경찰청장-----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경찰청장-----

-----.

1. 법 제110조제4항-----

-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

2. (현행과 같음)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
야 한다.

제81조(교육·훈련실적 제출) 해양
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
육·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80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
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
서의 검인·변경검인, 해양환경측
정기기의 형식승인·검정,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및 형식승
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
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②·③ (생략)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처리 비
용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신설>

-----.

제81조(교육·훈련실적 제출) ----

-- 해양수산부장관-----

-----.

제83조(수수료 등) ① ----

---- 검인·변경검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처리 비
용의 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해역관리청이 아닌 오염물질저장
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